

[X]. 새로운 부속서 II는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부속서 II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대한 비합치 조치

한국의 유보목록

서설

1. 이 유보목록은 제7나.12조(비합치 조치) 및 제7가.7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7나.5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7가.3조(내국민 대우)

나. 제7나.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7가.4조(최혜국 대우)

다. 제7가.6조(현지주재), 또는

라. 제7가.5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7나.12조(비합치 조치)제2항 및 제7가.7조(비합치 조치)제2항에 따라 유보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7나.12조(비합치 조치) 제2항 및 제7가.7조(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4.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가.6조(현지주재)와 제7가.3조(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7가.6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7가.3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7다-가(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12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상 약속을 저해하지 않고, 한국은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방위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방위사업법

4.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포함하여 중요기술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5. 분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 다음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 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 3)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6. 분야 총포, 도검,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공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공 분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 분야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 훈련, 공익사업, 대중교통, 공공주택, 보건, 그리고 보육.

10.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	-------------------

한국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
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7가.7
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7가.6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수산

나.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다. 항공, 또는

라. 철도운송

3. 한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지역경제통합협정에 따라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내부시장을 창설하는 협정

나. 설립의 권리를 부여하는 협정, 또는

다. 하나 이상의 경제 분야에서 법령의 근접화를 요구

하는 협정

이러한 제3항의 목적상,

가.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내부시장**이란 서비스,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내부적 경계가 없는 지역을 말한다.

나. **설립의 권리**란 이 항에 언급된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발효 시까지 그 협정의 당사자들 간에 설립에 대한 모든 장벽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의무를 말한다. 설립의 권리는 그러한 설립이 시행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규정되는 조건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국민의 권리를 포함한다. 그리고

다. **법령의 근접화**란 다음을 말한다.

- 1) 지역경제통합협정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의 법령을 그 협정의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법령과 정합시키는 것, 또는
- 2) 공통되는 법령을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법적 질서에 통합시키는 것

그러한 정합 또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국내 법적 질서 내로 입법화된 시점부터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자국이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여기는 모든 지역경제통합협정에 대하여 제15.2조(전문위원회)에 언급된 서비스무역 및 투자 위원회에 통보한다.

영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항에 따른 통보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서비스무역 및 투자 위원회 또는 별개의 협의에서 그 지역경제통합협정이 이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검토한다.

12.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분야 환경 서비스 - 음용수 처리·공급 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서비스,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 제외).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 분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 포함),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5. 분야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발전·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과 관련된 유보항목 44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16. 분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 45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17. 분야 유통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 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나. 곡물, 육류, 가금류, 곡분, 인삼, 홍삼 및 비료에 대한 도매(수입 포함) 서비스, 그리고

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 서비스

18.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9.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 운송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 제외)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0. 분야 운송 서비스 - 내륙수상운송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내륙수상운송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1. 분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2.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할 수 있는 차량 정수의 결정 및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한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국외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 및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우편법

병역법

공용차량관리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23.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방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유보항목(유보항목 43)과 불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기존의 조치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24.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 포함)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 및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25.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26.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유보항목(유보항목 24)과 불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27. 분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공급·관리·판매 및 임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8. 분야 사업 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7-라장(금융서비스)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합법적 투자은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9. 분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의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의 발효일에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 서비스 유보항목(유보항목 24)에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의 조치 콘텐츠산업 진흥법

30. 분야 사업 서비스 - 지적 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지적 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1.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2. 분야 사업 서비스 -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농협·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3.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4. 분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 포함)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분야

교육 서비스 - 유아·초등·중등·고등·성인 및 그 밖의 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구재 (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의료 및 보건 관련 성인 교육 서비스 외의 성인 교육 서비스 제외), 그리고 그 밖의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시험의 운영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 교육 정책에 따라 교육 시험을 선택하고 적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한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6. 분야 사회 서비스 -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7.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8.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국가유산기본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39. 분야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40. 분야 도박 및 베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은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
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
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관광진흥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41. 분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승인·등록·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법무회사(로펌)·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상사연합·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영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 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영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라. 다만, 다음에는 종사하지 않는다.

- 1) 법원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적 문서의 준비
- 2)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 3)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한국 내 부동산

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또는 이를 한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 4)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자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4. 투명성 목적으로,

가.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 실무에 종사했어야 하며,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나.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해당 대표사무소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법자문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해당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5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영국의 관련 법에 따라 조직되고 영국 내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영국이 아닌 국가의 법무회사(로펌)의 지점,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마. 외국법자문사는 1년에 최소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된다.

5.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영국 법무회사**(로펌)란 영국 법에 따라 조직되고 영국 내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42.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한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나. 외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내에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다음을 허용한다.

1) 영국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된 영국 공인회계사 또는 영국 회계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영국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2) 영국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된 영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나. 한국은 영국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된 영국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한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영국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된 영국 공인회계사 1인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자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영국 회계법인**이란 영국 법에 따라 조직되고 영국 내에 본사를 둔 회계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43.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한국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나. 외국 세무사가 한국 내에서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다음을 허용한다.

1) 영국 내에 등록된 영국 세무사 또는 영국 세무법인이 영국 또는 국제 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2) 영국 내에 등록된 영국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나. 한국은 영국 내에 등록된 영국 세무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한국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영국 내에 등록된 영국 세무사 1인은 한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자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영국 세무법인**이란 영국 법에 따라 조직되고 영국 내에 본사를 둔 세무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44. 분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5.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제7나.2조(정의)에 정의된 바에 따라,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 또는

나. 제7-라장(금융서비스)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한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46. 분야 운송 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¹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 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 해상여객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하여 유보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간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한국 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¹ 관련 국내법상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 양허표는 한반도 전체 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해상운송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반도 전체 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된다.

- 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또는
- 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
고선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7나.18
조(안보 예외) 및 제15.9조(안보 예외)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47. 분야 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특수항공 서비스를 제외한 항공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연구개발 서비스 a.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b.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c. 학제 간 연구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e. 기타 개인 또는 가정 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CPC 832)	서비스 공급형태 1부터 3까지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b.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	서비스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e.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2)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상업적 주체가 요구됨(Commercial presence is require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1**, 8812**) 항공에 의한 산불 진화 및 병해충 방제를 제외한 임업 부수 서비스(CPC 8814*)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가금류 감별 서비스(CPC 8812**)	서비스 공급형태 1부터 3까지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g.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CPC 882**)	서비스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h.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만 포함(CPC 884** 및 885**, 다만, 88411, 88450, 88442 및 88493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빌딩청소 서비스(CPC 874*, 다만, 87409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포장 서비스	서비스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전문디자인 서비스(CPC 98907)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b. 여행 대행 서비스	서비스공급형태 1부터 3까지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c. 관광객 안내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 (Only travel agencies are allowed to supply tourist guide services)”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컨벤션 대행 서비스 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공급형태 1부터 3까지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환경컨설팅 서비스 (CPC 9409*)	서비스 공급형태 1부터 3까지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D. 그 밖의 서비스 게임 서비스(CPC 964*, 다만, 96492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E. 레크리에이션 파크 서비스(CPC 96491, 다만, CPC96191, 96192 및 해변 서비스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선원 포함 선박 임대(CPC 7213)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한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gistered company for the purpose of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operating a fleet under the national flag of Korea)”,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예선 서비스(CPC 7214)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한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gistered company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a fleet under the national flag of Korea)”,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CPC 745**) ²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²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는 해상운송 분야에만 적용됨.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E. 철도 운송 서비스 c. 철도 유지 및 보수(CPC 8868의 일부)³ d. 철도 운송 부수 서비스(CPC 741의 일부, CPC 7113의 일부)⁴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G. 파이프라인 운송(CPC 7131**) 석유제품 운송에만 한정. 다만, LPG 운송은 제외함.⁵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그 밖의 서비스 c. 머리 미용 및 그 밖의 미장 서비스(CPC 9702)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

³ 철도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 소유 철도 시설에만 적용됨.

⁴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 소유 철도 시설에만 적용됨.

⁵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운송은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모든 분야 - 가스 산업”에 기재됨.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속 안함(Unbound)” ,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